

문서번호	홍보전산과-4626
결재일자	2015.2.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정보통신담당	홍보전산과장	행정국장
정덕환	주동근	권용대	02/05 손정수
협 조 자			

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」
성북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



2015. 2.

행 정 국
홍 보 전 산 과

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」
성북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

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에 따라 성북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우리구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I 근거 및 배경

관련근거
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9조(안전조치의무)
-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30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-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(행정자치부 고시/2014.12.30.)

추진배경

-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
-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중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·역할 등에 관한 사항,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,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된 증중기 관점의 계획 필요
- 개인정보의 유출 예방 및 안전한 관리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

II

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공개

주요내용

- 제1장 총 칙
-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제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
-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
- 제5장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
- 제6장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
- 제7장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
- 제8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

내부관리계획 공개

- 공개방법 : 공문 시행 및 인터넷 공개
 - 구의회, 부서, 동주민센터, 보건소, 성북구도시관리공단, 성북문화재단에 공문시행
 - 성북구 대표 홈페이지(www.seongbuk.go.kr)에 게재

III

향후 추진 계획

-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시행 및 공개 : '15.2월 중